

더샵 리오몬트

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I 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 치 :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2번지 일원
-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3층~최고층수 29층, 11개동 총 1,305세대 중 일반분양 8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주택형 : 59㎡, 72㎡, 84㎡A, 84㎡B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건설량 10% 범위)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및 타입별 배정 세대수

(단위 : 세대)

주택형 (전용)	59㎡		72㎡		84㎡A		84㎡B		계	
	배정	예비	배정	예비	배정	예비	배정	예비	배정	예비
장애인	5	25	5	25	6	30	1	5	17	85
국가유공자 등	3	15	2	10	3	15	-	-	8	40
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	6	30	5	25	6	30	1	5	18	90
중소기업근로자	13	65	11	55	15	75	1	5	40	200
장기복무 제대 군인	1	5	1	5	1	5	-	-	3	15
소계	28	140	24	120	31	155	3	15	86	430

※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,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■ 분양일정

구분	일정 (예정)	참고사항
입주자모집공고	2024. 06. 14. (금)	일간신문 및 '더샵 리오몬트' 분양홈페이지 (www.더샵리오몬트.kr)
건본주택 오픈	2024. 06. 14. (금)	더샵 리오몬트 건본주택 (주소 :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181)
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	2024. 06. 24. (월)	인터넷 청약신청 (PC/모바일) 청약홈 (09:00~17:30)
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(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)	2024. 07. 03. (수)	청약홈 개별 조회 (PC/모바일) 청약홈

※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.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,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(10:00~14:00)가 가능합니다. (※은행창구 접수 불가)

II 특별공급 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'무주택세대구성원'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단, '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' 및 '중소기업근로자'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. (단, 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 제외)

-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
<청약예금의 예치금액>

구분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
전용면적 85㎡ 이하 (더샵 리오몬트 59, 72, 84A, 84B 타입)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

■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

- "세대"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"세대원")으로 구성된 집단

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가. 주택공급신청자

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
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(예) 부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

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, 이하 같음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

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전혼자녀 등

-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

III 행정사항

-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는 주택소유 여부 및 당첨제한 사항 등 공급 대상자 자격확인을 진행하며, 확인 결과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당첨 시 해당 기관의 선정 여부, 동·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기관에서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주택소유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'청약홈'을 통한 인터넷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 배정) 및 계약 불가]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주택형별 세부 사항 등은 분양사무실, 팜플렛 및 분양홈페이지(www.더샵리오몬트.kr)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V 유의사항
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**인터넷 청약 신청일에 '청약홈'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** 하여야 합니다.
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 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]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도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특별공급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**인터넷 청약 신청일에 '청약홈'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** 하여야 하며, 예비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)에 중복신청(세대원 전원 해당)이 불가합니다.
단,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-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[계약체결 불가,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(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당첨이 제한됩니다.
-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, 청약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.
- 당첨자의 동·호수 배정은 특별공급·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(한국부동산원) 입주자선정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. 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수 발생 시에도 동·호수 변경 불가)
-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합니다.

문의 : 1555-3339